

 보도 자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3. 22.(화) 10:00 (지 면) 2022. 3. 22.(화) 10:00	배포 일시 2022. 3. 21.(월) 15:30		
담당 부서 <총괄>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미래교육전략팀	책임자 담당자	팀장 이상범 (044-203-7180) 박봉서 (044-203-7181)

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원격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최소한의 성취기준 등을 규정하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금지하는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는 업종(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을 규정하는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의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시행령은 지난 해 9월 24일(금)에 공포한 3개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3월 25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 각 시행령은 지난 6개월간 다양한 의견수렴 및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 >

- 이번 시행령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 원격교육의 운영 기준, 원격교육 기반(인프라) 구축 및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탈북학생 등
-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원격교육 편성 및 인정 기준, 학습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 원격교육 기반(인프라)을 구축하여 운영 시 안정성·보안성, 사용자 편의성은 물론 학생의 신체·정서 및 인지적 발달 단계와의 적합성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각종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취득·생산·활용되는 원격교육데이터 중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

- 이번 시행령 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국어·수학 등 교과와 내용의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정의하여,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방법으로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을 예시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의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정하여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것을 규정하였다.
- 학습지원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이번 시행령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관광숙박업 중 규모, 용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국민의 재산권 신장, 국내 관광산업 진흥 등을 고려하여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하였다.

※ <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 개념 >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교육지원청에 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기존의 지적측량 자료 외에도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였다.

※ (일반측량) 학교경계로부터 해당 시설과의 이격거리 확인/(지적측량) 토지의 모양 (외곽선) 확인

- 【붙임】 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2.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격교육법 시행령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미래교육전략팀	책임자	과 장 이상범 (044-203-7180)
		담당자	서기관 박봉서 (044-203-7181) 주무관 박혜운 (044-203-7185)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746)
		담당자	교육연구관 방희중 (044-203-6523) 사무관 김보현 (044-203-6964)
교육환경법 시행령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민동준 (044-203-6541)



붙임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원격교육의 시간, 수업일수 등 원격교육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학교 시설의 붕괴·파손,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3. 학생의 신체·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4.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이하 “원격교육시스템”이라 한다)과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5. 원격교육콘텐츠의 공동활용성 및 저작권 확보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관리위원회(이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에 두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원격교육의 시기, 방법 등 운영계획
2.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3.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4. 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2조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직원, 학생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학등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등의 장이 정한다.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2.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3.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운영 현황
4. 원격교육의 수강 현황, 학생 만족도 등 원격교육시스템 이용자 현황
5. 그 밖에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

료 작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에 관하여는 학교 등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4를 준용하고, 대학등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9를 준용한다.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생산·활용되는 데이터 중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1. 원격교육데이터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원격교육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 원격교육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할 것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원격교육 관련 통계작성에 필요한 경우
2. 원격교육에 관한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에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에 필요한 경우

③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 등 참여자가 작성한 게시물, 의견 등 학습기록에 관한 사항
2. 원격교육콘텐츠의 사용량, 이용 빈도 등 그 이용 특성에 관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는 자에게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연구의 목적·내용·기간·방법·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주소(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원격교육데이터의 내용과 제공방법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원격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원격교육을 포함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3.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의 범위 설정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명령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의 범위 설정
6. 법 제16조에 따른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원격연구 지원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8.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전담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부 칙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①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와 내용의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방법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자원 조달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 5. 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6. 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법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④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기초학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교육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다.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기초학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기초학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위원회와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초학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하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편입학·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교육 또는 상담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의 현황, 업무 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이하 “학습지원담당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담당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및 정책 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와 해당 학생의 학습을 위한 자료 개발·활용 지원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4. 학습지원담당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5.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 ③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 관련 전공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이나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의 추진 지원
2. 시·도 교육청의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4.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5. 제7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③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촉하되, 지역위원회가 설치되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지역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13조제4호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지적측량 자료”를 각각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측량 자료를 해당”을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그”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제22조제5항(중건의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직원, 관련 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u>지역위원회가 설치되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③ ~ ⑥ (생 략)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위촉한다. ③ <u>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지역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u>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3조(위원의 해임·해촉) ----- ----- -----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위원 중 <u>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u> 5. 6. (생 략)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u>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된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② 교육감은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u>지적측량 자료를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u>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 ----- 1. ~ 3. (현행과 같음) 4. ----- <u>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u> ----- ----- ----- 5. 6.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 ----- <u>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u> ----- ----- <u>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u> ----- ----- ② ----- ----- ----- <u>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그</u> ----- -----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u> ”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	---

<p>④ 법 제9조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p>	<p>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p> <p>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p> <p>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p>
---	--